

#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법관리 수준 변경 화학물질

-시행일 : 2017.3.3-

## □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(4종)

가. 관리대상 유해물질 :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24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·흠(fume), 미스트(mist)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, 금속류, 산·알칼리류, 가스상태 물질류(총 171종)

### 나. 대상 화학물질

연번	CAS No.	화학물질명	혼합물질 적용 용량비율
1	122-60-1	페닐글리시딜에테르	1% 이상
2	117-81-7	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	
3	8032-32-4	브이엠 및 피 나프타	
4	126-99-8	2-클로로-1,3-부타디엔	

### 다. 관리대상 유해물질 지정에 따른 법적용 사항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 내지 451조 적용
- (설비기준 등) 제422조 내지 제435조 : 국소배기장치, 작업장 바닥, 경보설비, 긴급차단장치 설치 등
- (작업방법 등) 제436조 내지 제438조 : 작업수칙, 탱크 내 작업, 사고시의 대피 등
- (관리 등) 제441조 내지 제449조 : 사용 전 점검, 저장, 빈 용기 등의 관리, 유해성 등의 주지 등
- (보호구 등) 제450조 및 제451조 :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, 보호복 등의 비치

□ 특별관리물질 추가 지정(20종)

가. 특별관리물질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11의2제1호 나목에 따른 발암성, 생식세포 변이원성,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(총 36종)

나. 대상 화학물질

연번	CAS No.	화학물질명	CMR* 분류 결과**	혼합물질적용 용량비율
1	25321-14-6	디니트로톨루엔	C 1B, M 2, R 2	0.1%이상
2	127-19-5	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	R 1B	0.3%이상
3	68-12-2	디메틸포름아미드	R 1B	
4	109-86-4	2-메톡시에탄올	R 1B	
5	110-49-6	2-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	R 1B	
6	7439-97-6	수은 및 그 화합물 (아릴 및 알킬화합물제외)	R 1B	
7	8052-41-3	스토다드솔벤트	C 1B, M 1B	
8	107-13-1	아크릴로니트릴	C 1B	
9	79-06-1	아크릴아미드	C 1B, M 1B, R 2	
10	110-80-5	2-에톡시에탄올	R 1B	0.3%이상
11	111-15-9	2-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	R 1B	
12	75-56-9	1,2-에폭시프로판	C 1B, M 1B	0.1%이상
13	556-52-5	2,3-에폭시-1-프로판올	C 1B, M 2, R 1B	
14	151-56-4	에틸렌이민	C 1B, M 1B	
15	107-06-2	이염화에틸렌	C 1B	
16	96-18-4	1,2,3-트리클로로프로판	C 1B, R 1B	
17	127-18-4	퍼클로로에틸렌	C 1B	
18	75-55-8	프로필렌이민	C 1B	
19	302-01-2	하이드라진	C 1B	
20	77-78-1	황산디메틸	C 1B, M 2	

\* C(Carcinogenicity) : 발암성, M(germ cell Mutagenicity) : 생식세포변이원성, R(Reproductive toxicity) : 생식독성

\*\*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41호에 따른 분류 결과

나. 특별관리물질 지정에 따른 법적용 사항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및 440조
- 제439조(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)
- 제440조(특별관리물질의 고지)

□ 법관리 수준 변경(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 추가 지정)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등 이행

☞ 동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(2017.9.2일까지) 아래 조항에 해당되는 설비 또는 장비 등 설치

- 제422조(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)
- 제423조(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)제3항
- 제424조(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)제3항
- 제431조(작업장의 바닥)
- 제432조(부식의 방지조치)
- 제434조(경보설비 등)
- 제435조(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)
- 제448조(세척시설 등)
- 제451조(보호복 등의 비치 등)제3항

※ 자세한 법조항은 첨부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